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268 호 2020. 12. 17.(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3호[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4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5호[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5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6호[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15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7호[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8호[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29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9호[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60호[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4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61호[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62호[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63호[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56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66호[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 61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237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6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239호[주택건설사업계획(제4차 변경)승인 고시]..... 6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241호[2021년도 예산 고시]..... 68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414호[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7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431호[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444호[전통시장 인정(구역확대) 공고]..... 8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0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3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 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체결 시 협약내용 공증 의무화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사무위탁 협약내용의 공증 의무화 규정 삭제

2. 주요내용

-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내용 공증 의무화 규정 삭제(제8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응권 (인)

2020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지방보조금 신청 제한 및 감액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신청 제한·감액 규정 삭제(제21조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0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이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한다. 이 경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실·국장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현안 사업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국별 주무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내역서를 취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12조(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수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평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평가·점검을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 칭 기재	'00.00.00		○○○실장 ○○○과장 ○○○사무관
○ 내용	'00.00.00		○○○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기재 항목>

-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⑥ 선정기준 : 주요현안 / 10억 이상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 구민신청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中 택 1
 -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기재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제2항에 따라 우리 구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여 정책실명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나. 정책의 실명 관리 및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제3조, 제4조)

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제5조)

- 1) 주요 현안 사업
-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4)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 5) 구민이 신청한 사업 등

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제6조 ~ 제10조)

- 1)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마.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제11조)

바. 정책 이력관리 및 사업평가, 포상 등(제12조 ~ 제14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0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 라. 청년의 생활안정
- 마.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
-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 사.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관련 업무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4.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제안하고 청년정책의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3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구청장은 취업 애로 및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권리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청년센터 및 시설 설치·운영 등

제19조(청년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울산

광역시 북구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청년시설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년시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거주 지원시설 : 주거독립이 필요한 청년에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청년창업 지원시설 : 청년에게 창업 및 새로운 직업·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청년고용 지원시설 :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그 밖에 청년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
6. 협의체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 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2020. 8. 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명시한 자치법규가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청년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청년센터 및 청년시설 설치 등 청년문제를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3조, 제4조)
- 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 등(제5조, 제6조)
- 라. 청년정책위원회(제7조 ~ 제11조)
- 마. 청년정책협의체(제12조)
- 바.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제13조 ~ 제18조)
- 사. 청년센터 및 시설 설치·운영 등(제19조, 제20조)
- 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제21조)
- 자.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제22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0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청년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창업 공간 및 청년 창업자 경영·기술개발 지원
- 2. 청년 창업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 3.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 4.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3(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등) ①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
- 2.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 창업기업
- 3.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이 청년인 창업기업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모집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 및 선정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를 “제6조, 제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에 따라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육성하고 창업전문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청년창업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제6조의2)

-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나.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등(제6조의3)

-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 및 입주방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0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8호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관·단체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여

한다. 다만, 필요시 동장도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미풍양속 순화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구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사람
3. 구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구 소속 기관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인 개인 및 기관·단체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
3. 교육훈련 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기관·단체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 직원
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따르며, 포상수여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상장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구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이 직접 추천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의) ①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포상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 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의 대리수령)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받을 수 있다.

제15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장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공	로	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공	로	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인

[별지 제5호서식]

(앞면)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 자)	
(2) 생년월일		(3) 군 번 (군인의 경우)	
(4) 성 별		(5) 국 적 (외국인의 경우)	
(6) 주 소			
(7) 직 업		(8) 소 속	
(9) 직 급		(10) 직 위	
(11) 근무기간		(12) 공적분야	
(13) 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		(15) 추천순위	
조 사 자			
(16) 소 속		(17) 직 위	
(18) 직 급		(19) 성 명	(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0) 년 월 일	(21) 이 력	(22) 년 월 일	(23)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4) 년 월 일	(25) 내 용	(26) 년 월 일	(27) 내 용
(28) 공 적 사 항			
→ 공적조서(을)지 작성 ()매			

공 적 조 서(을)

(28) 공 적 사 항

[별지 제7호서식]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포상 번호	포 상 연월일	포상 종류	포상 기관	소속 또는 주소	직위 또는 직급	성 명	생년월일
포상하게 된 공적개요							

상기와 같이 포상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직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성실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 현재 시행되지 않는 “민주구민질서상” 관련 조항 삭제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포상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

2. 주요내용

가. 포상대상자 개정(제2조)

[현행] 공무원·구민(외국인 포함) 및 단체

[개정] 구민(외국인 포함)·기관·단체 및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

나. 포상의 종류 개정(제4조)

[현행] 표창장·감사장·상장 및 민주구민질서상

[개정] 표창장 및 표창패,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 및 상패,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

다. 퇴직직원 공로패 수여 근거 신설(제8조)

라.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 결격사유 검토사항 신설(제10조)

마. 공적심의 신설(제11조)

바. 포상의 대리수령 근거 신설(제14조)

사. 포상의 취소 관련 내용 신설(제16조)

아. 포상사실 확인에 관한 내용 신설(제17조)

자. 그 밖의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차. 별지 서식 정비, 공로패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 별지 서식 신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0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9호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체결”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낚시공원 입장 전까지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으로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자치법규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된 사항의 개정 권고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내용 공증의무 규정 삭제(제6조제1항)
- 사용자 개별적 반환 사유 신설(제7조제2항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0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6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 업무 소관 부서장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

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정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 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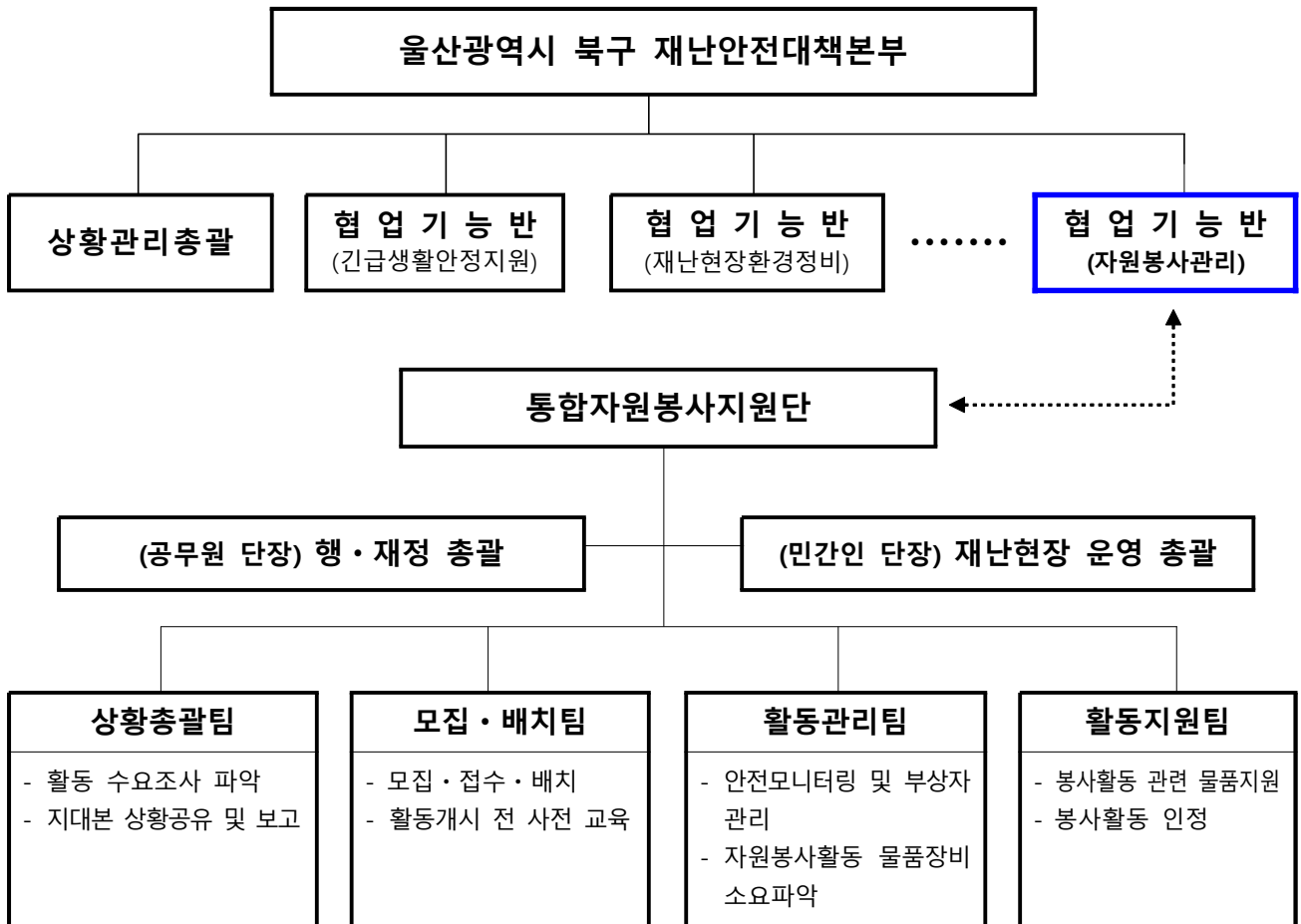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임무(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직 위	담 당 임 무
통합 자원 봉사 지원 단장	공무원	자원봉사업무 소관 부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관련 행·재정 지원 사항 총괄 ○ 자원봉사활동 상황 관리 및 필요 사항 발굴·지원
	민간인	자원봉사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관련 현장 총괄
실 무 팀	상황 총괄팀	자원봉사업무 소관 부서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필요사항 발굴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공유 및 보고 등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및 홍보 총괄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분야, 인원 등 수요 조사
	모집· 배치팀	자원봉사센터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자원봉사센터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교육, 안내·모집 및 일별·분야별 배치 등
	활동 관리팀	자원봉사센터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모니터링(위험요소 관찰), 의료기관과 연계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활동 평가(모니터링, 활동 기록 등)
	활동 지원팀	자원봉사업무 소관 부서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자원봉사센터 직원	

※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이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임무를 정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
-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제4조 ~ 제6조)
- 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제7조)
-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제8조, 제9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0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의2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도래(2020. 12. 31.)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의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기한 연장(제5조의2)
 - 2020년 12월 31일까지 ⇒ 2025년 12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0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6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정 적립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 나. 재난예방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
 - 다. 인명구조장비, 안전장비 등의 확보
 - 라.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재 구입 및 장비 임차
 - 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 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 사. 정밀 안전점검 또는 진단결과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보강·철거

아.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자.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차.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카.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파.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울산광역시 복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6조제1항 중 “영 제74조에 따라 지원하는”을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42조”를 “제42조”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 기금의 용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법정적립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으로 개정(제3조)
- 나. 기금의 용도 등(제5조, 제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0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63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5.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6.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제4호에 따른 건분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각종 점검 대상 중 위임사항 규정(제3조 ~ 제6조)
- 나. 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사항(제7조, 제8조)
- 다.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
- 라.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제10조)

울산광역시 복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등권 (인)

2020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66호

울산광역시 복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23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약수2길 84-1(매곡동) 외 2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90)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2.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2길 84-1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480-2	2020-12-17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2길 82-1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480-1	2020-12-17	건축물 멸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7길 39-1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1-4	2020-12-17	건축물 멸실	
4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7길 41-1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1-3	2020-12-17	건축물 멸실	
5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7길 41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70-2	2020-12-17	건축물 멸실	
6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2길 82-2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73-1	2020-12-17	건축물 멸실	
7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2길 82-4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73	2020-12-17	건축물 멸실	
8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2길 78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72	2020-12-17	건축물 멸실	
9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2길 76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75	2020-12-17	건축물 멸실	
10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2길 74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76-3	2020-12-17	건축물 멸실	
11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2길 72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76-1	2020-12-17	건축물 멸실	
12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7길 39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70-3	2020-12-17	건축물 멸실	
13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2길 75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71-1	2020-12-17	건축물 멸실	
14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7길 35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70-1	2020-12-17	건축물 멸실	
15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7길 33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9	2020-12-17	건축물 멸실	
16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2길 71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84-1	2020-12-17	건축물 멸실	

연번	도로명주소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7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2길 69-1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84-3	2020-12-17	건축물 멸실	
18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2길 69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84-4	2020-12-17	건축물 멸실	
19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2길 67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83-2	2020-12-17	건축물 멸실	
20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2길 65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83-1	2020-12-17	건축물 멸실	
21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7길 27-1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95	2020-12-17	건축물 멸실	
22	울산광역시 북구	차일1길 35-1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424-4	2020-12-17	건축물 멸실	
23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61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432-4	2020-12-17	건축물 멸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 2020 - 23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제4차 변경)승인 고시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외 1인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동 20-1번지의 44필지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제4차 변경)승인 하였기에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1】 참조

2020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붙임1】

1. 사업계획(제4차 변경)승인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사업명칭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변경없음
사업위치	염포동 20번지 외 44필지					염포동 20-1번지 외 44필지					변경
사업주체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주)신태양건설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주)신태양건설					변경없음
사업주체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진장동)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 3층(진장동)					변경없음
대지면적	29,343.2㎡					29,343.2㎡					변경없음
건축면적	10,958.302㎡					10,958.302㎡					변경없음
연 면 적	33,921.9061㎡					33,921.9061㎡					변경없음
건폐율/용적률	37.35% / 95.16%					37.35% / 95.16%					변경없음
층수/동수/세대수	지하1층~지상5층/주22동, 부7동/264세대					지하1층~지상5층/주22동, 부7동/264세대					변경없음
사업규모 (단위 ㎡)	형별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형별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
	78A	191	78.0625	25.0535	103.1160	78A	191	78.0625	25.0535	103.1160	변경없음
	78B	1	78.0625	25.0607	103.1232	78B	1	78.0625	25.0607	103.1232	변경없음
	84A	71	84.8436	27.0206	111.8642	84A	71	84.8436	27.0206	111.8642	변경없음
	84B	1	84.8436	27.0206	111.8642	84B	1	84.8436	27.0206	111.8642	변경없음
부대복리시설	구 분	합 계				구 분	합 계				-
	관리사무소	61.138㎡				관리사무소	61.138㎡				변경없음
	경비실	34.874㎡				경비실	34.874㎡				변경없음
	전기/기계실	194.6796㎡				전기/기계실	194.6796㎡				변경없음
	재활용품 보관소	24.39㎡				재활용품 보관소	24.39㎡				변경없음
	작은 도서관	96.768㎡				작은 도서관	96.768㎡				변경없음
	경로당	93.456㎡				경로당	93.456㎡				변경없음
	주민공동시설	674.554㎡				주민공동시설	674.554㎡				변경없음
	어린이놀이터(3개소)	465.41㎡				어린이놀이터(3개소)	465.41㎡				변경없음
	조경시설	6,964.72㎡(23.73%)				조경시설	6,964.72㎡(23.73%)				변경없음
사업비	73,568,000천원					73,568,000천원					변경없음
사업기간	2018. 12. 10. ~ 2021. 08. 31.					2018. 12. 10. ~ 2021. 08. 31.					변경없음
승인조건	“붙임” 문서 참조					“붙임” 문서 참조					변경없음

2.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3. 승인관련 서류 : 북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241호

2021년도 예산 고시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의결을 얻은 2021년도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7.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의회 의결일자 : 2020. 12. 15.
 2021년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총 계	395,383,980	100.00%	373,435,078	100.00%	21,948,902	5.88%
일반회계	392,747,058	99.33%	370,976,966	99.34%	21,770,092	5.87%
특별회계	2,636,922	0.67%	2,458,112	0.66%	178,810	7.27%
기타특별회계	2,636,922	0.67%	2,458,112	0.66%	178,810	7.2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8,120	0.05%	171,191	0.05%	6,929	4.0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8,900	0.02%	76,100	0.02%	△7,200	△9.46%
주차장특별회계	2,389,902	0.60%	2,209,067	0.59%	180,835	8.19%

□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장·관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증감률
총 계	392,747,058	100.00 %	370,976,966	100.00 %	21,770,092	5.87%
100 지방세수입	78,037,000	19.87 %	75,637,000	20.39 %	2,400,000	3.17%
110 지방세	78,037,000	19.87 %	75,637,000	20.39 %	2,400,000	3.17%
200 세외수입	24,629,583	6.27 %	23,290,199	6.28 %	1,339,384	5.75%
210 경상적세외수입	19,399,489	4.94 %	17,976,843	4.85 %	1,422,646	7.91%
220 임시적세외수입	4,331,694	1.10 %	4,473,194	1.21 %	△141,500	△3.16%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8,400	0.23 %	840,162	0.23 %	58,238	6.93%
300 지방교부세	13,600,000	3.46 %	11,416,000	3.08 %	2,184,000	19.13%
310 지방교부세	13,600,000	3.46 %	11,416,000	3.08 %	2,184,000	19.13%
400 조정교부금등	46,895,300	11.94 %	45,060,720	12.15 %	1,834,580	4.07%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46,895,300	11.94 %	45,060,720	12.15 %	1,834,580	4.07%
500 보조금	221,912,241	56.50 %	204,302,553	55.07 %	17,609,688	8.62%
510 국고보조금등	142,818,195	36.36 %	135,707,378	36.58 %	7,110,817	5.24%
520 시·도비보조금등	79,094,046	20.14 %	68,595,175	18.49 %	10,498,871	15.31%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72,934	1.95 %	11,270,494	3.04 %	△3,597,560	△31.92%
710 보전수입등	7,000,000	1.78 %	10,700,000	2.88 %	△3,700,000	△34.58%
720 내부거래	672,934	0.17 %	570,494	0.15 %	102,440	17.96%

□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증감률
총 계	392,747,058	100.00 %	370,976,966	100.00 %	21,770,092	5.87 %
010 일반공공행정	18,786,019	4.78 %	17,744,676	4.78 %	1,041,343	5.87 %
020 공공질서및안전	2,318,670	0.59 %	1,767,654	0.48 %	551,016	31.17 %
050 교육	1,518,503	0.39 %	837,825	0.23 %	680,678	81.24 %
060 문화및관광	25,133,432	6.40 %	24,276,914	6.54 %	856,518	3.53 %
070 환경	13,122,800	3.34 %	11,915,747	3.21 %	1,207,053	10.13 %
080 사회복지	208,975,259	53.21 %	198,386,584	53.48 %	10,588,675	5.34 %
090 보건	10,427,346	2.65 %	9,211,460	2.48 %	1,215,886	13.20 %
100 농림해양수산	21,396,211	5.45 %	18,942,595	5.11 %	2,453,616	12.95 %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370,289	0.60 %	2,729,903	0.74 %	△359,614	△13.17 %
120 교통및물류	5,817,253	1.48 %	9,315,148	2.51 %	△3,497,895	△37.55 %
140 국토및지역개발	19,630,557	5.00 %	17,224,751	4.64 %	2,405,806	13.97 %
160 예비비	3,838,159	0.98 %	3,117,014	0.84 %	721,145	23.14 %
900 기타	59,412,560	15.13 %	55,506,695	14.96 %	3,905,865	7.0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1414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조성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번지 일원

3. 사업개요 : 면적 A=59,174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신명바다청소년야영장 대표이사 박만석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번지

5. 사업기간

(당초) 2014. 08. 28. ~ 2020. 12. 31.

(변경) 2014. 08. 28.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위치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합계			100,900	59,174			
1	신명동	산30	입	37,586	0	(주)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
		104-10	입	11,595	11,595		
2	신명동	104-7	입	35,511	35,511	(주)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
3	신명동	104-4	입	8,022	8,022	(주)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
4	신명동	104-2	답	260	260	김O이	남구 무거동 1261-2
5	신명동	산1-3	입	1,732	1,649	고O숙	전라북도 남원시 오들1길 **
						박O면	전라북도 남원시 오들1길 **
						박O진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로 ***
						윤O희	전라북도 남원시 오들1길 **
6	신명동	산1-5 (104-11)	도	1,374	1,360	건설부	
7	신명동	산1-7 (104-12)	입	554	553	건설교통부	
8	신명동	산27-3	도	160	156	건설부	
9	신명동	산28-1	구	4,106	68	농림수산부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1431호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복구 평생학습관 개관 예정에 따라 “평생교육센터”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평생교육센터장”을 “평생학습관장”으로 변경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강료·사용료 징수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생학습관 명칭 변경(안 제9조의2제1항, 제11조, 제12조 등)
- 평생학습관장 직위 변경(안 제14조)
- 수강료·사용료 징수기준 개정(안 별표)

3.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제7조, 제28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2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문화체육과 (우)44248
- 전화번호 : 052-241-7392
- 팩스번호 : 052-241-7339
- E-mail : kimhoony@korea.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https://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의견서 1부. 끝.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제3장의 제목,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8조 중 “평생교육센터”를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을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교육센터는”을 “평생학습관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는”을 각각 “평생학습관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평생교육센터장”을 각각 “평생학습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평생교육센터가”를 “평생학습관이”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강료 · 사용료 징수기준(제16조제3항 관련)

1. 수강료

운 영 과 정	수 강 료	기준단위	비 고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 과정	50,000원 이하/과정	주 2회, 12주 기준	
자격증 취득 훈련과정	2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평생교육 일반과정	1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가. 1회는 1시간(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시는 기준액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나. 강의와 관련한 재료비, 교재비 등은 수강생으로 부담한다.

2. 복사기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규 격	1매 기준	금 액	비 고
전자복사지	A4	단 면	30	
		양 면	60	
	B4, A3	단 면	40	
		양 면	80	

3.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료	구 분	사용료
대강당	50,000	대강당 냉·난방시설	20,000
		강의실 냉·난방시설	10,000
강의실	30,000	빔프로젝트	10,000

1. 사용 기준 : 1회 2시간
2. 시설 사용 시간은 평생학습관의 운영 시간에 한함
3. 기준 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기준액의 30%를 가산
4.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장비 파손 시 손해 배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의2(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p> <p>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간의 협력 증진과 협의회, 울산광역시 북구 <u>평생교육센터</u>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u>평생교육센터</u></p> <p>제11조(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 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u>평생교육센터</u>(이하 “<u>평생교육센터</u>”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u>평생교육센터</u>는 구 관할 구역에 둔다.</p> <p>제12조(기능) <u>평생교육센터</u>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업을 수행한다.</p> <p>1. ~ 8. (생략)</p> <p>제13조(운영) ① <u>평생교육센터</u>는 구청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평생교육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u>평생교육센터</u>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생략)</p>	<p>제9조의2(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p> <p>① - - - - -</p> <p>- - - - -</p> <p><u>평생학습관</u> - - - - -</p> <p>- - - - -</p> <p>-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u>평생학습관</u></p> <p>제11조(설치) ① - - - - -</p> <p>- - - - -</p> <p>- - <u>평생학습관</u>(이하 “<u>평생학습관</u>”이라 한다)을</p> <p>- - - - -</p> <p>② <u>평생학습관</u>은 - - - - -</p> <p>제12조(기능) <u>평생학습관</u>은 - - - - -</p> <p>-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제13조(운영) ① <u>평생학습관</u>은 -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② <u>평생학습관</u> - - - - -</p> <p>- - - - -</p> <p>- - - - -</p> <p>- - - - -</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운영요원 등) ① <u>평생교육센터</u>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u>평생교육센터장</u>,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과장에게 <u>평생교육센터장</u>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과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u>평생교육센터</u>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4조(운영요원 등) ① <u>평생학습관</u> - - - - - - <u>평생학습관장</u> - - - - - - .</p> <p>② - - - - - - - - <u>평생학습관장</u> - - - - - - - - - - - - <u>평생학습관</u> - - - - - - - .</p>
<p>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u>평생교육센터</u>가 관리·운영하는 시설 또는 강좌의 이용자에게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p>	<p>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 - - - - <u>평생학습관이</u> - - - - - - - - - - - - - - - .</p>
<p>② ~ ④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7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u>평생교육센터</u>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7조(자원봉사자) --- <u>평생학습관</u>-- - - - - - - - - - - - - - - - .</p>
<p>제18조(보험) 구청장은 <u>평생교육센터</u>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p>	<p>제18조(보험) ----- <u>평생학습관</u> -- - - - - - - - - - - - - - - - .</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수강료·사용료 징수기준(제16조제3항 관련)</p> <p>1. 수강료</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25%;">운 영 과 정</th> <th style="width:25%;">수 강 료</th> <th style="width:25%;">기 준 단 위</th> <th style="width:2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 과정</td> <td>50,000원 이하/과정</td> <td>주 2회, 12주 기준</td> <td></td> </tr> <tr> <td>자격증 취득 훈련과정</td> <td>20,000원 이하/월</td> <td>주 2회 기준</td> <td></td> </tr> <tr> <td>평생교육 일반과정</td> <td>10,000원 이하/월</td> <td>주 2회 기준</td> <td></td> </tr> </tbody> </table> <p>가. 1회는 1시간(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시는 기준액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나. 강의와 관련한 재료비, 교재비 등은 수강생으로 부담한다.</p> <p>2. 복사기 사용료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15%;">구 분</th> <th style="width:15%;">규 격</th> <th style="width:15%;">1매 기준</th> <th style="width:15%;">금 액</th> <th style="width:1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전자복사지</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A4</td> <td style="text-align: center;">단 면</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양 면</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B4, A3</td> <td style="text-align: center;">단 면</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양 면</td> <td style="text-align: center;">80</td> <td></td> </tr> </tbody> </table>	운 영 과 정	수 강 료	기 준 단 위	비 고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 과정	50,000원 이하/과정	주 2회, 12주 기준		자격증 취득 훈련과정	2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평생교육 일반과정	1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구 분	규 격	1매 기준	금 액	비 고	전자복사지	A4	단 면	30		양 면	60		B4, A3	단 면	40		양 면	80		<p>[별표] 수강료·사용료 징수기준(제16조제3항 관련)</p> <p>1. 수강료</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25%;">운 영 과 정</th> <th style="width:25%;">수 강 료</th> <th style="width:25%;">기 준 단 위</th> <th style="width:2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 과정</td> <td>50,000원 이하/과정</td> <td>주 2회, 12주 기준</td> <td></td> </tr> <tr> <td>자격증 취득 훈련과정</td> <td>20,000원 이하/월</td> <td>주 2회 기준</td> <td></td> </tr> <tr> <td>평생교육 일반과정</td> <td>10,000원 이하/월</td> <td>주 2회 기준</td> <td></td> </tr> </tbody> </table> <p>가. 1회는 1시간(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시는 기준액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나. 강의와 관련한 재료비, 교재비 등은 수강생으로 부담한다.</p> <p>2. 복사기 사용료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15%;">구 분</th> <th style="width:15%;">규 격</th> <th style="width:15%;">1매 기준</th> <th style="width:15%;">금 액</th> <th style="width:1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전자복사지</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A4</td> <td style="text-align: center;">단 면</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양 면</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B4, A3</td> <td style="text-align: center;">단 면</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양 면</td> <td style="text-align: center;">80</td> <td></td> </tr> </tbody> </table> <p>3. 시설 사용료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15%;">구 분</th> <th style="width:15%;">사 용 료</th> <th style="width:15%;">구 분</th> <th style="width:15%;">사 용 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대강당</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5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강당 냉·난방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강의실 냉·난방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강의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빔프로젝트</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td> </tr> </tbody> </table> <p>1. 사용 기준 : 1회 2시간 2. 시설 사용 시간은 평생학습관의 운영 시간에 한함 3. 기준 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기준액의 30%를 가산 4.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장비 파손 시 손해 배상</p>	운 영 과 정	수 강 료	기 준 단 위	비 고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 과정	50,000원 이하/과정	주 2회, 12주 기준		자격증 취득 훈련과정	2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평생교육 일반과정	1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구 분	규 격	1매 기준	금 액	비 고	전자복사지	A4	단 면	30		양 면	60		B4, A3	단 면	40		양 면	80		구 분	사 용 료	구 분	사 용 료	대강당	50,000	대강당 냉·난방시설	20,000	강의실 냉·난방시설	10,000	강의실	30,000	빔프로젝트	10,000
운 영 과 정	수 강 료	기 준 단 위	비 고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 과정	50,000원 이하/과정	주 2회, 12주 기준																																																																																					
자격증 취득 훈련과정	2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평생교육 일반과정	1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구 분	규 격	1매 기준	금 액	비 고																																																																																			
전자복사지	A4	단 면	30																																																																																				
		양 면	60																																																																																				
	B4, A3	단 면	40																																																																																				
		양 면	80																																																																																				
운 영 과 정	수 강 료	기 준 단 위	비 고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 과정	50,000원 이하/과정	주 2회, 12주 기준																																																																																					
자격증 취득 훈련과정	2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평생교육 일반과정	10,000원 이하/월	주 2회 기준																																																																																					
구 분	규 격	1매 기준	금 액	비 고																																																																																			
전자복사지	A4	단 면	30																																																																																				
		양 면	60																																																																																				
	B4, A3	단 면	40																																																																																				
		양 면	80																																																																																				
구 분	사 용 료	구 분	사 용 료																																																																																				
대강당	50,000	대강당 냉·난방시설	20,000																																																																																				
		강의실 냉·난방시설	10,000																																																																																				
강의실	30,000	빔프로젝트	10,000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조(공공시설의 이용)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호

전통시장 인정(구역확대) 공고

우리구 관내 아래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 12. 17.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시 장 명 : 호계공설시장
2. 인정일자 : 2020. 12. 17.(최초등록일 2015. 02. 25.)
3. 전통시장 인정(안) 조서
 - 가. 시 장 명 : 호계공설시장
 - 나. 대 표 자 : 정춘택
 - 다. 소 재 지 : 울산 복구 호계3길 17-11 일원
 - 라. 변경내역 : 시장인정구역 확대
 - 구역면적 : 기존 9,635㎡ ⇒ 변경 19,586㎡(증 9,951㎡)
 - 점 포 수 : 기존 53개소 ⇒ 변경 125개소(증 72개소)